

# 타행 이체 약관

## 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거래처가 홍콩상하이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이 제공하는 타행이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이용시간)

타행이체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시간으로 한다.

## 제3조 (송금 가능 계좌)

타행 송금 가능 계좌는 보통, 저축, 당좌예금으로 정한다.

## 제4조 (이체의 처리)

① 고객이 의뢰한 송금은 요청 당일 처리한다. 다만 컴퓨터등 전산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는 장애복구후에 이체 처리한다.

② 자기앞수표로 입금이체 한 경우에는 동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추심절차가 완료된 때 출금이 가능하다.

## 제5조 (출금이체의 한도)

일일 최대 출금이체한도는 은행 고객계좌의 인출가능금액 중 은행이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.

## 제6조 (수수료)

타행 이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.

## 제7조 (거래의 성립 등)

① 고객이 지시한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때로 한다. 이 때 은행이 거래지시에 포함된 출금계좌번호, 서명 또는 인감 등을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타행이체를 처리한 경우, 수취계좌번호 기재오류 등 고객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거래 오류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②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통신기기, 회선 및 컴퓨터 등에 의한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은행이체서비스가 일시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,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.

③ 은행이 입금오류, 입금불능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고객이 사전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. 또한 사전 신고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

전자 007-01 (2005.09.26)

은행에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#### **제8조 (준용 규정)**

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“예금거래 기본약관”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